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리더칼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 정하음

이슈진단

건설단체들의 바람·적정공사비 확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 지원방안 필요성

연구원소식

연구원 춘계 체련행사
연구자문위원회 위촉

발간물안내

건설정책리뷰 - 건설공사 물품 구매 발주 개선 방안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800만의 호소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 정하음



안녕하세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 정하음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푸른 신록의 계절이 찾아 왔습니다.

눈부신 초록의 싱싱함처럼 활기차고 행복한 6월이 되기를 바라며 시원한 빗줄기에 더위도, 미세먼지도 시원하게 씻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반도에는 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나, 우리 전문건설 업계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국내 SOC예산축소, 과도한 공사비 삭감, 노동 관련 정책변화등으로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SOC 예산은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전년대비 14%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연 7.5%의 감축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공사비 삭감은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을 극도로 낮추고 있고,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건설사는 2016년 이익률이 -25%에 달하고 있어 공사비 부족에 따른 영업손실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7월1일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협회를 비롯한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적정공사비 지급, 중소기업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공기연장 추가 비용 반영 의무 법제화, 정부 발주 공사에 근로자 법정제수당 반영등을 요구하며 지난 5.31일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대회를 갖고 정부와 국회에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국민 호소대회는 대한민국의 건설산업 태동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적자 공사로 인한 건설업계의 출혈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며, 생존권 위기감의 발로였습니다.

공사비 부족은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 업체에 전가돼 업계 전체가 동반 부실화되면서 현장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 부족과 업계 수익성 악화가 지속 되면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는 물론 나아가 국민의

생활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기술개발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위축을 발생시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함께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품질의 공사를 위해서는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극히 원초적인 요구에 정부는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공사비를 현실화해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고 정상

적인 대가가 지불되는 공정한 구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달력을 넘기며 마음을 줄이는 전국 800만 건설인의 호소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지금도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는 모든 건설인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단체들의 바람·적정공사비 확보

조재용 선임연구원 (adelid83@ricon.re.rk)

5월3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가졌다. 이번 호소대회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외에도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소방시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지하수지열협회 등 건설인 7,000여명이 참석하였다. 건설 관련 22개 협회의 7,000여명의 건설인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적정공사비 부족 문제가 업종에 관계없이 건설업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었다.

건설 산업은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위주의 공사비 책정, 17년간 변하지 않는 낙찰하한율, 영업 이익률 바닥권 전전, 만연한 적자 시공,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날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에 모인 건설인들은 ①덤핑입찰 낙찰배제 가격기준(순공사원가)의 법제화, ②중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적용배제 법제화, ③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10% 상향, ④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떨어진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 정상화, ⑤기술형 입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⑥공기연장 추가비용 반영의무 법제화, ⑦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근절 법제화, ⑧공공공사 가격 산정기준 개선, ⑨정부 정책변화 등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반영의 9가지 대책을 요구하였다. 건설인들의 9가지 대책을 살펴보면 핵심은 매우 간단하다.

제대로 된 품질을 갖춘 공사를 위해서 적절한 비용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사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공사비 부족 등으로 인해 무리한 시공, 낮은 품질의 자재 사용으로 이어져 건설현장 재해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남양주와 의정부 등지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우리에게 문제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최저가 만능이 아니라 적정가격을 인정할 시기가 다가왔다.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공사에서는 100원을 주고 90원짜리 물건을 받을 것이 아니라, 105원을 주고 100원짜리 물건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건설인들에게 90원을 주면서 100원짜리 물건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공사비로는 공사를 수행하기도 빠듯한 상황인 것이다. 충분한 공사비를 통해 여유가 있어야 건설업체도 신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재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 발주자들은 무조건 저렴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좋은 물건을 적절한 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정부 어느 한 부처만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품질 좋은 인프라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전체에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업계, 공공발주처, 연구기관 관계자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조속히 찾아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 지원방안 필요성

박 광 배 연구위원 (jwjb2021@ricon.re.kr)

2018년 2월 28일 근로기준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68시간까지 가능하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한 1주일을 7일로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개정 이전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관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을 5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평일 8시간 근로와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되어 52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여기에 1주일에서 제외되어 있던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근로 각각 8시간씩을 허용하여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1주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게 되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업체,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업체차원에서는 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업은 생산환경 및 생산방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더 많은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 업체 차원의 대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업체 차원의 대비 못지않게 지원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책을 제안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품질에 부정적이며,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사비용 증가요

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면담결과 공사기간 연장과 노무비 단가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적용대상 건설사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2는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수가 산정(연인원/가동일수)되는데, 6월은 가동일수가 매월 평균에 비해 높지 않다.

또한 공공공사는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간공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건설업은 탄력적 시간근로제를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운영되는 것은 근로자에게도 필요하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도 현재의 방식이 아닌 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에 따른 시공능력으로 변경하는 것이 요구된다.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 시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추가고용에 따른 세제상 혜택도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공사는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되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의 중요성과 비중이 큰 건설업이므로 숙련근로자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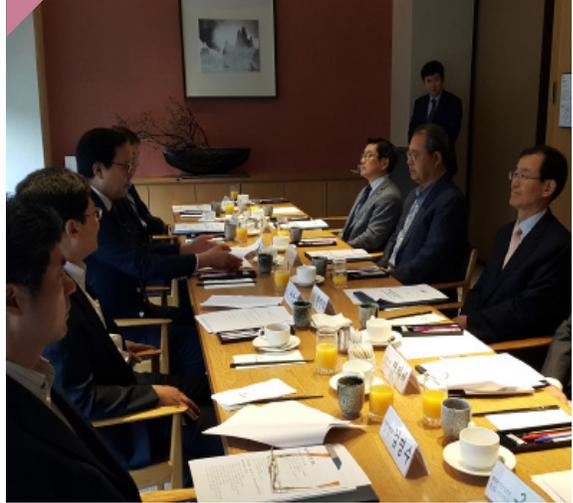
연구원 춘계 체련행사



우리 연구원은 지난 6월 1일, 인왕산에서 '2018 임직원 춘계 체련행사'를 진행하였다.

- 이날 행사에는 서명교 원장을 비롯해 임직원이 참여해 인왕산 트레킹과 운동주 문학관 견학 등의 행사를 통해 소통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위촉 및 회의개최



우리 연구원은 6월 21일(목)에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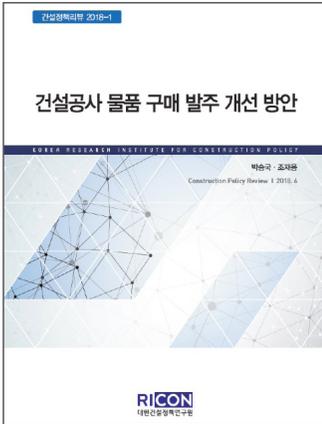
이날 회의는 서명교 원장의 개회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김영운 회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 진행과 추진실적을 재점검하고 건설생산체계 개편,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적정공사비 확보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18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 ▲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김수삼 ▲ 서울대학교 교수 이복남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한만희 ▲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현수 ▲ 전 감사원 감사연구원장 염차배 ▲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명수

연구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전문건설의 외연확대와 지원세력을 확보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점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건설정책리뷰 - 건설공사 물품구매 발주 개선방안



공공기관에서 설치가 포함된 물품구매 계약 발주 과정에서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되어야 함에도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현장설치도 포함)하는 관행이 보편화 되어 있다. 설치 공사가 수반되어야만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는 시설공사로 발주되어 해당되는 공사의 면허를 보유한 공사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물의 하자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발주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치 공사가 포함된 물품구매 계약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업 및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간 업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발주 방식의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본문은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건설공사'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명칭이나 설치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행위'는 '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시설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물품구매(현장설치 조건)로 발주시 물품 자체의 결함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기간(1년) 내에 물품교체에 의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나 목적물의 운영과정에서 설치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대해서는 발주자의 대응이 어려워지게 되어 하자보수 분쟁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할 경우, 물품구매계약 관련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공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물품의 설치는 관련 공사업법상 공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설치를 물품 구매·제조에 포함하여 일괄 입찰하게 되면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는 설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고도 이를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시 시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경우 명확한 기준 없이 설치 공사가 필요한 물품을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하는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물품 제조·구매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설치가 수반되어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발주하여야 할 경우에는 물품 구매·제조가 아니라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